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--|
| 의안번호 | 17-37 |
|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- 가. 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고,
- 나.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의 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의2, 제8조, 제10조)
- 나.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5항)
-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.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7. 3. 23. ~ 4. 1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○ 권고사항 : 자문단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확보를 위한 규정 필요

제4조의3(전문가 자문단 운영)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(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)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을 30명 내외로 구성·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,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
다만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○ 조치사항 : 미반영

- 해당 전문가 자문단은 자문분야가 공사, 용역, 공동체 활성화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, 의무자문 대상은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」에 따라 공사 1억원, 용역 5천만원, 지원금 1천만원 이상으로, 대부분의 자문이 공사분야에 집중되어 있고,

- 이러한 공사 분야는 급배수, 전기, 가스, 승강기, 도장, 방수 등으로 여성 전문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,

- 자문단 운영도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라, 공동주택의 자문신청에 따라 분야별 위촉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서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균형참여의 대상인 합의제기관으로 보기 어려움.

- 따라서,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은 실효성이 없음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 및 제34조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의3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49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50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81조제2항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 및 제98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 및 제99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5항제2호 중 “천재지변”을 “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”으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

(제4조제1항 관련)

1. 지원비율

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<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>

| 지 원 사 업 | 자치구 분담률 | 공동주택 분 담 률 | 비 고(증감률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, CCTV의 설치·유지 | 70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% 증액 ▪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% 증액 ▪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% 증액 ▪ 소형 임의관리대상(100세대 이하)은 지원금의 10% 증액 ▪ 그 밖의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▪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|
| 2.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| 70 | 30 | |
| 3.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| 70 | 30 | |
| 4.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| 70 | 30 | |
| 5.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| 70 | 30 | |
| 6.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 60 | 40 | |
| 7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| 60 | 40 | |
| 8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| 60 | 40 | |
| 9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| 60 | 40 | |
| 10.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| 60 | 40 | |
| 11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| 60 | 40 | |

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<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>

| 지 원 사 업 | 자치구 분담률 | 공동주택 분 담 률 | 비 고(증감률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| 60 | 4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(단, 임의관리단지는 미적용) ▪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% 증액 ▪ 소형 임의관리대상(100세대 이하)은 지원금의 10% 증액 ▪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|
| 2. 경로당의 보수 | 60 | 40 | |
| 3.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| 50 | 50 | |
| 4.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·개선 | 50 | 50 | |
| 5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 | 50 | 50 | |
| 6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·개선 | 50 | 50 | |
| 7.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 | 50 | 50 | |
| 8.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| 50 | 50 | |
| 9.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| 50 | 50 | |
| 10. 에너지절감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| 50 | 50 | |
| 11.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| 50 | 50 | |
| 12.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| 60 | 40 | |
| 1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50 | 50 | |

2.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(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)

가.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

| 분 야 | 평 가 항 목 | 평 가 기 준 | 특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관 리 투명성 (40점) |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(5) | 생중계(5), 녹화(3), 미공개(0) | |
| |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(3) | 공개(3), 미공개(0) | |
| |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(2) | 사용(2), 미사용(0) | |
| |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(4) | 시행(4), 미시행(0) | |
| |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(4) | 수립(4), 미수립(0) | |
| | 3.3㎡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(4) | 500 원이상(4), 300~500원(3) 100~300원(2) 100원 미만(1) | |
| | 2억원 이상 공사,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(2) | 실시(2), 미실시(0) | |
| |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(2) | 공개(2), 미공개(0) | |
| |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(4) | 보고(4), 미보고(0) | |
| |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(4) | 실시(4), 미실시(0) | |
| |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(3) | 점검조치(3), 미점검(0) | |
| |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(3) | 가입(3), 미가입(0) | |
| 공동체 활성화 (40점) | 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(5) | 구성(5), 미구성(0) | |
| |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(4) | 구성(4), 미구성(0) | |
| |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(강좌 등) 운영 여부(5) | 3강좌이상(5), 1~2강좌(3), 미운영(0) | |
| |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(4) | 참여(4), 미참여(0) | |
| | 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(3) | 2개시설이상(3), 1개시설(2), 미개방(0) | |
| |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 간 갈등 해소 사업 추진(3) | 2개사업이상(3), 1개사업(2), 미추진(0) | |
| |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(3) | 안건상정(3), 안건 미상정(0) | |
| | 상가대표단,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발언(2) | 참석(2), 미참석(0) | |
| | 층간소음,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(4) | 운영(4), 미운영(0) | |
|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(7) | 2개사업이상(7), 1개사업(4), 미실시(0) | | |
| 시 책 이 행 (20점) |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(5) | 적정(5), 미흡(3), 미반영(0) | |
| |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(5) | 적정(5), 미흡(3), 미반영(0) | |
| |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(3) | 적정(3), 미흡(1), 미준수(0) | |
| | 에너지절약, 재활용품,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(5) | 적정(5), 미흡(3), 미이행(0) | |
| | 관련자료 제출,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(2) | 이행(2), 미이행(0) | |

나.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

| 평가점수 | 95점이상 | 90점이상 | 85점이상 | 80점이상 | 75점이상 | 70점이상 | 65점이상 | 65점미만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증 감 율 | 120% | 110% | 100% | 90% | 80% | 70% | 60% | 50% |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% 적용 |

3.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

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

- 산정방법 : 전체사업비 × 마포구분담률 × 제1호의 증감률

지원금 산정(예시)

-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 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
- 1억원(전체사업비)×70%(마포구분담률)×110%(인근 지역주민 포함)×110%(임의관리 대상 증액 10%)=8천4백7십만원

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

- 산정방법 : 전체사업비×마포구분담률×공동체활성화 등 평가×제1호의 증감률

지원금 산정(예시)

-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
-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
- 1억원(지원신청액)×50%(마포구분담률)×110%(추진실적 결과)×110%(임의관리 대상 증액 10%) = 6천5십만원

4. 지원금의 상한액

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(지원금의 지원비율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%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 단,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5. 지원제외 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)

[별표 2]

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

(제4조의3제1항 관련)

1. 자문단 위촉기준

| 공사 및 용역 부문 | 공동체 활성화 부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| 가.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|
| 나.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| 나.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|
| 다.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| 다.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|
| 라.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| 라.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.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|

2. 자문분야

| 공 사 부 문 | 용 역 부 문 | 공동체 활성화 부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토목 ⑪ 건축 ⑫ 그 외의 사항 |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|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, 프로그램 개발 등 |

3. 자문절차 :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

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

(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)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| 세 대 수 | 세대 |
| |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| 년 월 일 | 연 락 처 |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자문신청 내 용 | ※ 구체적으로 작성(공간부족시 별지 작성)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

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 : 자문에 필요한 서류(사업계획, 도면, 견적서, 전자파일 등)

□ 자문절차



□ 처리기한 : 1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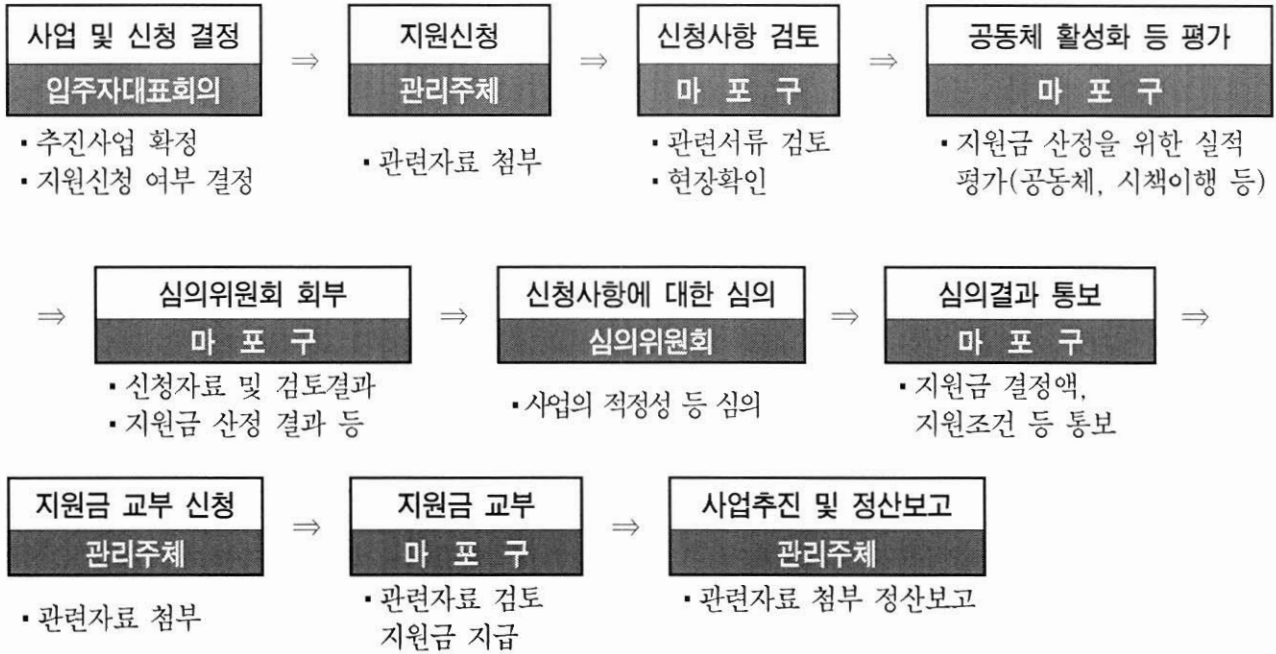
□ 자 문 료 : 무료

유의사항

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·용역·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.

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, 재개발·재건축·리모델링 등은 마포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처리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)

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

(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

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|-------|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| 세 대 수 | 세대 |

지 원 신 청 내 용

| 사 업 명 | 사업비(단위:천원) | | | 사업기간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| 총 계 | 자체부담 | 지원신청 | 착수예정일 | 완료예정일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총 계 | | | | | |

| 입금계좌 | 은행명 | 예금주 | 계좌번호 |
|------|-----|-----|------|
| | | | |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

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 : 1.통장사본(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), 2.설계도서(노임, 재료비등 산출 근거내역 포함), 3.공사·사업계약서 사본, 4.공사·사업계약의 입찰내용 및 계약자 선정 공고문 (게시판등에 입주민에 공지한 내용),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

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

(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

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|------|
| 사업단지 | 공동주택명 | | 연 락 처 | |
| | 주 소 |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
| 사업명 | | | | |
| 계약내용 | 발 주 자 | | | |
| | 계약상대자 | | | |
| | 계약금액 | | | |
| | 계약보증금 | | | |
| | 착수년월일 | | | |
| | 준공예정일 | | | |
| | 기 타 | | | |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
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 : 계약서 사본 1 부.

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

(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|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| 연 락 처 | | | | |
| | 주 소 | |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 | | |
| 사 업 명 | | | | | | | | |
| 사업기간 | 착수예정일 | 년 | 월 | 일 | 완료예정일 | 년 | 월 | 일 |
| 지 원 액 <small>(단위:천원)</small> | 총 액 | | 자체부담액 | | 지 원 액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연장사유 | ※ 구체적으로 기재(내용이 많을시 별첨) | | | | | | | |
|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. | | |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
|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| | | | | | (인) | | |
| 관 리 사 무 소 소장 | | | | | | (인) | | |
|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| | | | | | | | |
| 구비서류 :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 | | | | | | | | |

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

(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

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|-------|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| 세 대 수 | 세대 |

지 원 신 청 내 용

| 사 업 명 | 당초 사업비(단위:천원) | | | 실 집행액(단위:천원)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| 총 계 | 자체부담 | 지원금(①) | 총 계 | 자체부담 | 지원금(②)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총 계 | | |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|
| 반납액(①-②) | 원 | 반납예정일 | 년 월 일 |
|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|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

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: 1. 사업실적보고서, 2. 공사·사업계약서 사본, 3. 지출증빙서류(지출결의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 등), 4. 공사 전·후 사진, 5. 준공계 사본,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 및 제34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3조(적용범위) 지원대상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4조(지원대상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신 설></p> | <p>제4조(지원대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⑤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</p> | <p>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----- -----</p> |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. 「주택법」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「주택법」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8조(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) ①·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「주택법」 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-----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-----

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-----

② -----

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제1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 및 제99조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(생략)
2.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 보수비

[별표 1]
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
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

5. 지원제외 대상

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59조에 의한 하자 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
[별표 2]

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
(제4조제2항 관련)

2. 자문분야

| 공 사 부 문 | 용 역 부 문 | 공동체 활성화 부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〈신설〉 ⑩ 그 외의 사항 |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|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, 프로그램 개발 등 |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 -----

[별표 1]
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
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

5. 지원제외 대상

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
[별표 2]

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
(제4조의3제1항 관련)

2. 자문분야

| 공 사 부 문 | 용 역 부 문 | 공동체 활성화 부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토목 ⑪ 건축 ⑫ 그 외의 사항 |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|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, 프로그램 개발 등 |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면)

|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용역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 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세 대 수 | 세대 |
| |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| 년 월 일 | 연 락 처 | |
| 자문 신청 내용 | ※ 구체적으로 작성(공간부족시 별지 작성) | | | |
|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 다. | |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 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| | | | |
| 구비서류 : 자문에 필요한 서류(사업계획, 도면, 견적서, 전자파일 등) |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

(앞면)

|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세 대 수 | 세대 |
| |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| 년 월 일 | 사 용 검 사 일 | 년 월 일 |
| <생략> | | | | |

(뒷면)

지원 제외 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에 의한 하
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
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
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설립
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
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
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
지원 가능)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면)

|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용역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 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<삭 제> | 세 대 수 | 세대 |
| |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| 년 월 일 | 연 락 처 | |
| 자문 신청 내용 | ※ 구체적으로 작성(공간부족시 별지 작성) | | | |
|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의3에 따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 니다. | |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 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| | | | |
| 구비서류 : 자문에 필요한 서류(사업계획, 도면, 견적서, 전자파일 등) |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

(앞면)

|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<삭 제> | 세 대 수 | 세대 |
| |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| 년 월 일 | 사 용 검 사 일 | 년 월 일 |
| <현행과 같음> | | | | |

(뒷면)

지원 제외 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
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
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
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
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
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
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
으로 지원 가능)

[별지 제3호 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 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세 대 수 | 세대 |
| (생략) | | | | |

[별지 제4호 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사업단지 | 공동주택명 | | 연 락 처 |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
| (생략) | | | | |

[별지 제5호 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연 락 처 |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
| (생략) | | | | |

[별지 제6호 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동 번지 | 세 대 수 | 세대 |
| (생략) | | | | |

[별지 제3호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신청 단지 | 공동 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<삭 제> | 세 대 수 | 세대 |
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
[별지 제4호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
| 사업단지 | 공동주택명 | | 연 락 처 | |
| | 주 소 | <삭 제>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
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
[별지 제5호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연 락 처 | |
| | 주 소 | <삭 제> | 동수/세대수 | 동 세대 |
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
[별지 제6호서식]

|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(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체 활성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신청단지 | 공동주택명 | | 동 수 | 동 |
| | 주 소 | <삭 제> | 세 대 수 | 세대 |
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